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용비행장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추가〉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91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7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이재강 의원 등 13인
2. 발의일 : 2026. 7. 22.
3. 회부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 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따른 공여구역¹⁾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호나목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군용비행장”이란 「 <u>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u> 」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u>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u> 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u> <u>역을-----.</u>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3. ~ 6. (생략)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 나. 그 밖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 6.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조제2호²⁾에 따르면 “군용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고 있음.³⁾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이에 따라 위 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라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반면,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군사 목적의 항공기가 운용되어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소음대책지역⁵⁾ 지정 및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국가배상법」⁶⁾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상황임.

실제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구역에서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으나,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항공작전기지는 군의 항공작전의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평택비행장(K-6)·군산비행장(K-8)·오산비행장(K-55)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 상 군용비행장에 해당하여, 주한미군 측에 요청하여 항공기 운항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5) 「군소음보상법」 제2조(정의)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7)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이 2024.11.14.~12.31.까지 캠프 스탠리* 인근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피해 신고 접수 결과에 따르면, 신고자 68명 중 94%가 헬기 소음으로 ‘상당히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동 구역은 군용비행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음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언론보도 “미군 떠나고 헬기 급유지된 의정부 캠프 스탠리…소음 고통 주민들”, 한국일보, 2025.2.18.).

* 캠프 스탠리: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일원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헬기 급유지로 사용되고 있음.

근거지를 말하는데, 해당 구역은 헬기가 급유를 위하여 일종의 경유하는 장소로 항공작전의 근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헬기전용작전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군용 비행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⁸⁾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취지가 군용항공기의 운용에 따라 특정 지역 주민이 겪는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행장의 법적 지정 형태와 관계없이 주민이 실제로 겪는 소음피해가 동일하다면 이를 동등하게 구제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봄.

- 또한, 개정안은 모든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상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실제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구역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8) 개정안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전방재 급유지(FARP)*가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군용비행장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전방재급유지(Forward Arming and Refueling Point): 항공기에 연료와 무기를 채워주는 지역으로서, 한국군의 경우 전시에 작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임.

□ 다만, 군용비행장의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기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 온 군용비행장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현행 보상체계의 일관성이 약화될 수 있고, 현재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른 유사시설에 대해서도 보상 요구가 이어져 재정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항공작전기지 중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항공작전기지⁹⁾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

9)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K - 2	대구광역시 동구
다.	K - 3	경상북도 포항시
라.	K - 4	경상남도 사천시
마.	K - 6	경기도 평택시
바.	K - 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	K - 13	경기도 수원시
아.	K - 16	경기도 성남시
자.	K - 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차.	K - 4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카.	K - 55	경기도 평택시
타.	K - 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파.	K - 58	경상북도 예천군
하.	K - 59	충청북도 청주시
거.	K - 75	충청북도 충주시
너.	K - 76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K - 10	경상남도 창원시
나.	K -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다.	K - 60	충청북도 청주시
라.	G - 113	경기도 고양시
마.	G - 217	경기도 포천시
바.	G - 222	경기도 양주시
사.	G - 404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아.	G - 40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	삭제 <2023. 4. 18.>	

차.	G - 510	경기도 이천시
카.	G - 536	충청남도 논산시
타. 삭제 <2014.6.17>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K-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나. 삭제 <2009.11.17>		
다.	G-103	인천광역시 부평구
라.	G-110	경기도 파주시
마.	G-213	경기도 가평군
바.	G-231	경기도 포천시
사.	G-23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아.	G-280	경기도 하남시
자.	G-218	경기도 양주시
차.	G-290	경기도 남양주시
카.	G-301	경기도 양평군
타.	G-30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파.	G-31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	G-31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거.	G-41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너.	G-42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더.	G-501	경기도 용인시
러.	G-53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머.	G-610	충청북도 음성군
버.	G-801	경상북도 영천시
서.	G-107	경기도 김포시
어.	G-7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저.	N-234	경기도 평택시
처.	G-228	경기도 연천군
커.	G-505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나. 민간 비행장: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항, 인천
공항, 무안공항

다. 헬기예비작전기지

1)	G-162	경기도 연천군
2)	G-227	경기도 연천군
3)	G-233	경기도 포천시
4)	G-235	경기도 연천군
5)	G-3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6)	G-40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7)	G-41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8)	G-41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9)	G-41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10)	G-70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항공작전기지(전술항공작전기지·지원항공작전기지·헬기전용작전기지·예비항공작전기지) 중
군용비행장은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함.